

발행인 : 용산구청장  
 편집인 : 홍보담당관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 용산구보

선	기관의 장
람	

**제2011호**      2019. 3. 22.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고 시

고시 제2019-33호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2
고시 제2019-34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3
고시 제2019-35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거리 지정 고시 .....	5

◎ 공 고

공고 제2019-262호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7
공고 제2019-277호 : 도시관리계획(효창4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10
공고 제2019-289호 : 용산구청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모집 공고 .....	12
공고 제2019-292호 :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및 수시분)공시송달 공고 .....	16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용산구 홈페이지 <http://www.yongsan.go.kr>(용산소개 → 용산구보)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 (02)2199-6700 / 전송 : (02)2199-5510
- 구보발행일은 매주 금요일(필요시 수시 발행)이며, 발행일 3일전까지 접수

공														
람														



# 고 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9-33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 구 건물 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지번주소)
원효로19길 65	2019/3/22	철거	원효로3가 233

○ 안내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2199-6980)에 문의 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9-34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 구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및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도로명주소 고시 대상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원효로3가 233	원효로19길 65	2019/3/22	신축	2010/7/16	원효로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위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02-2199-6980)에 문의 또는 용산구청 홈페이지([www.yongsan.go.kr](http://www.yongsan.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9-35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거리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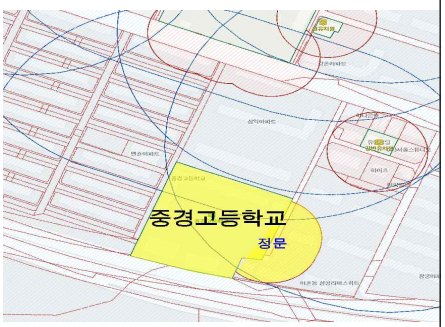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1. 지 정 취 지

- 「서울시 학교 주변 금연거리 지정사업」과 관련하여 중경고등학교 주변 거리(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금연환경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2. 금연거리 지정 내용

- 지정대상 및 범위

구분	내 용	
상정 일	2019년 4월 1일	
지정 대상	중경고등학교 정문 주통학로	
지정 범위	이촌로84길 34(중경고등학교 측면부) 단편 보행로 200m	
상세 위치		
	현재 금연구역 (학교철대성화구역) 2015.5.1. 지정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학교주변 금연구역 지정 구역

- 계 도 기 간 : 2019년 4월 1일 ~ 2019년 9월 30일 (6개월간)
- 단속 개시일 : 2019년 10월 1일
-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3. 고 시 방 법 : 구보,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보건소 보건행정과(☎02-2199-836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공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9-262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06호(2009.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20호(2009.12.17)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91호(2013.3.28)로 결정 및 변경결정 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7-36호(2017.3.30), 용산구고시 제2018-60호(2018.5.31)로 실시계획 인가된 용산구 용산동3가 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실시계획을 같은법 제90조,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용산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가. 인가신청의 요지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명 칭 : ○○부대 체육시설 신축사업

## 2)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용산구 용산동3가 1번지의 28필지

## 3)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국방부(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4)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9. 6. 30.

## 5)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설면적(㎡)	시설계획			비 고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건축물 현황	
기 정	276,970.9	51,364.95 (18.55%)	346,034.88 (74.68%)	기존 본관동 포함 51동	
변 경	276,970.9	51,418.95 (18.56%)	346,088.88 (74.70%)	기존 본관동 포함 52동	건축면적 증54㎡ 연면적 증54㎡

## ※ 금회 사업내용

- ○○부대 체육시설 신축 : 1동(지상1층), 건축면적 54㎡, 연면적 54㎡

## 나.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1)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2) 열람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2199-7394)

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라. 실시계획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2199-73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계				384,064.9	276,970.9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	대지	63,718.0	63,718.0	국방부장관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92	도로	2,891.3	782.9	국방부장관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93	도로	543.1	543.1	국방부장관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4-1	대지	23,655.2	23,655.2	국방부장관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4-3	대지	2,756.0	2,756.0	국방부장관	
6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4-4	대지	1,901.5	1,901.5	국방부장관	
7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4-5	대지	2,199.7	2,199.7	국방부장관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5-1	대지	33,588.9	32,141.6	국방부장관	
9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6	대지	15,299.7	15,259.4	국방부장관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6-4	도로	17,070.3	13,455.4	국방부장관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9	대지	30,476.0	30,476.0	국방부장관	
12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1-1	대지	17,300.2	7,851.8	국방부장관	
13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1-2	대지	13,255.2	13,255.2	국방부장관	
14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1-3	대지	1,510.7	1,510.7	국방부장관	
15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2-1	대지	58,021.3	3,452.3	국방부장관	
16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2-4	대지	10,145.4	10,145.4	국방부장관	
17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2-5	대지	3,071.1	3,071.1	국방부장관	
18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2-6	대지	416.5	416.5	국방부장관	
19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2-5	대지	1,471.1	109.6	국방부장관	
20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2-65	대지	4,393.5	3,418.0	국방부장관	
21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3-1	대지	39,661.0	14,956.5	국방부장관	
22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3-2	대지	4,934.0	4,934.0	국방부장관	
23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4	대지	7,206.6	7,206.6	국방부장관	
24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5-1	대지	859.7	859.7	국방부장관	
25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6-1	대지	10,637.0	10,637.0	국방부장관	
26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6	대지	6,576.2	2,114.7	국방부장관	
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7-2	대지	284.9	284.9	국방부장관	
28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7	대지	7,083.7	2,721.0	국방부장관	
29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19-781	도로	3,137.1	3,137.1	국방부장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9-277호

## 도시관리계획(효창4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8호('06.10.26)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결정 고시되고 용산구 고시 제2014-14호('14.2.12)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되어 이전고시 완료('19.2.28)된 효창제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용산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22일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I.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II. 열람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02-2199-7413)
- III.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효창4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효창4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효창동 91번지 일대	9,999.80	-	9,999.80	-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명 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원	소공원	효창동 91일대	484.40	감)484.40	-	서고358호	
변경	공원	역사공원	상동	-	증)484.40	484.40	(06.10.26)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①	공원	·기정 - 공원(소공원) ·변경 - 공원(역사공원)	공원 부지 내 기념관 건립을 위해 공원의 세분 구분에서 소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IV.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V.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도시계획과(☎02-2199-7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9-289호

## 용산구청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종합행정타운 구내식당 위탁급식 운영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건 명 : 용산구청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모집 공고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2019. 6. 8. ~ 2020. 6. 7.)  
 - 규정, 계약조건 등 이행여부, 고객 만족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 계약기간 연장 가능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2. 시설 현황

-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종합행정타운 지상 10층  
 나. 면 적 : 총 면적 1,164.12㎡(352.75평)  
 - 홀 622.99㎡(188.78평) / 주방 205.88㎡(62.38평) / 공용면적 335.25㎡(101.59평)  
 다. 좌 석 수 : 300석

#### 3. 위탁조건

- 가. 급식방법 : 조·중·석식 및 행사식 운영

구 분	운영시간	식단가	메뉴	비고
조 식	08:00~09:00	제안 대상*	복수 메뉴 가능	한식 기준 1식 4찬 이상
중 식	11:30~13:30	제안 대상*	복수 메뉴 필수	
석 식	18:00~19:00	제안 대상*	복수 메뉴 가능	
행사식	사전 요청			

## 나. 급식단가(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조 식	중 식		석 식	행사식
		한 식	양 식		
직원	3,300원 이하	3,800원 이하	3,800원 이하	3,800원 이하	별도 협의
민원인	4,000원 이하	4,500원 이하	4,500원 이하	4,500원 이하	

다. 이용현황 (2019년 2월 기준) : 일평균 748명(직원 594명, 민원인 154명)

## 라. 일반인 구내식당 이용제한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항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외부인의 식사를 제한하고 있으며, 청사를 방문한 내방 민원인이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으나 향후 민원인의 구내 식당 이용이 문제가 될 경우 민원인 식수가 제한될 수 있음

## 마. 비용부담

- 1) 임대료 및 공공요금
  - 임 대 료 : 면제 (부과사유 발생 시 별도 협의)
  - 공공요금 : 위탁업체가 매월 가스요금 별도 납부
- 2) 부담범위 : 구체적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을 가지며, 동법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나.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본사 소재지를 둔 자

- 본사란 법인등기부 등본상 소재지를 말하며, 지사·대리점은 참가할 수 없음

다.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따라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자

## 라. 제3자에게 하도급 및 공동도급 참여 불가

## 5. 위탁운영업체 선정방법

가. 자체 제안서 평가기준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협상을 통해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 나. 1차 심사 (서류 평가)

- 1) 평가대상 :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 2) 평가항목 : 경영상태, 수행능력

## 다. 2차 심사 (현장 평가)

- 1) 평가대상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상위 4개 업체
- 2) 평가항목 : 음식의 맛과 구성, 식당 운영체계, 위생상태, 직원서비스

## 라. 3차 심사 (발표 평가)

- 1) 평가대상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상위 4개 업체
- 2) 평가항목 : 구내식당 종합운영 계획, 식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위생·안전 관리, 고객서비스 제고방안, 급식환경 개선 계획
- 3)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제안서 PT발표
- 4)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9. 4. 17. (수) 14:00 (예정)
  - 장 소 : 영상회의실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지상 9층)
- 5)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업체당 발표는 15분 이내, 질의응답은 10분 이내로 하고, 참여업체별 참석인원은 3명 이내로 제한

마. 세부협상 및 선정결과 공고

1) 세부협상

- 3차 심사 종료 후, 2차와 3차 심사 합산점수 순위로 협상대상업체 발표
- 우선순위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 협상 진행
- 최고점수 동점자 발생 시, 제안서평가의「식당 운영계획」, 「식자재 수급 및 품질관리」순의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되, 상기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정함

2) 선정결과 공고 : 협상결과에 따른 계약체결 후 공고

※ 모든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

6. 선정 일정

구 분	세 부 내 용	일 정
모집공고	▶ 위탁업체 모집 공고(구 홈페이지, 온비드)	2019. 3. 20.(수) ~ 3. 29.(금)
↓		
사업제안서 접수	▶ 제안요청서에 의한 제안서 접수	2019. 4. 1.(월) ~ 4. 2.(화)
↓		
1차 심사	▶ 제출서류 평가	2019. 4. 3.(수)
↓		
2차 심사	▶ 현장 평가 (직원심사단)	2019. 4. 8.(월) ~ 4. 12.(금)
↓		
3차 심사	▶ 제안서 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	2019. 4. 17.(수)
↓		
세부협상	▶ 우선순위업체부터 세부협상	2019. 4. 22.(월) ~ 5. 2.(목)
↓		
계약 체결	▶ 최종 선정 업체와 계약 체결	2019. 5. 3.(금) 한
↓		
선정 공고	▶ 최종 선정업체 공고 (구 홈페이지)	2019. 5. 7.(화) ~ 5. 13.(월)

가. 입찰공고 : 2019. 3. 20.(수) ~ 3. 29.(금)

나. 입찰참가 신청서 및 서류접수

1) 접수기한 : 2019. 4. 1.(월) ~ 4. 2.(화) 09:00 ~ 17:00

2)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에 한함 (인터넷, 우편 접수 불가)

3)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종합행정타운 9층 행정지원과 후생교육팀)

※ 모든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업체에 개별 통보

7. 입찰 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의함

나. 추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9.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부합되는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에 따른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자에게 있음

나. 제안자는 공고문의 첨부문서로 배부된 제안요청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당해 입찰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다. 공고문에 나오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로 같음하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

라. 3차 제안서 평가 참여업체는 여분의 장비 및 자료(노트북 등) 별도 준비 (타 제안업체 배석 금지)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후생교육팀(☎ 02-2199-6343 / 강태환)으로 문의 하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9-292호

##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수시분)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사전통지서 및 수시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21일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고사유 : 수취인불명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
2. 공고기간 : 2019. 3. 21. ~ 4. 5.(15일간)
3. 처분원인 : 불법옥외광고물(현수막 및 벽보)설치
4. 게시장소 : 서울시 용산구청,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성명	납제자 기본주소	위반내용	과세년월 (부과금액)	반송사유 (반송일)	등기번호
이*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26번길 44-4, 1층호 (토당동)	현수막 불법게첨	2019. 2. 19 (960,000원)	수취인불명 (2019. 2. 22)	10956-6404 -1751
주식회사 알*단*코*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디리로 124-1 상가2층 (서교동)	현수막 불법게첨	2019. 2. 28 (1,416,000원)	수취인불명 (2019. 3. 5)	10956-6404 -9575
해*디*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1, 1호 (남창동, 금오빌딩)	벽보 불법게첨	2019. 2. 28 (180,000원)	수취인불명 (2019. 3. 6)	10956-6404 -9576



6. 문의사항 : 용산구청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02-2199-7720)

※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